

입법의견조사 2002-1

입법의견동향

(2001.12.11 ~ 2002.5.10)

2002. 7.

研究者：宋 永 仙(專門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 입법의견 현황	7
헌 정	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	
통일 · 외교	10
○ 국제수형자이송법(가칭) 제정의견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일반행정	1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행정심판법 개정의견	
내무 · 지방행정	15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견	
○ 주민대표소송제관련 입법의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의견	
문화 · 관광	20
○ 개정 영화진흥법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공연법 등	
○ 공연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의견	
○ 공연예술분야 지원관련 입법의견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저작권법 개정의견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출판및인쇄진흥법(가칭) 제정의견

교육·학술 29

- 개정 청소년기본법
- 농어촌교육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의견
-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노동 32

- 법정퇴직금제도관련 입법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주5일근무제관련 입법의견

재정·경제 34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 법인세폐지관련 입법의견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조세구조 개선관련 입법의견
- 조세특례제한법령관련 입법의견

통상·산업 39

-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개정 기술이전촉진법·특허법
- 개정 은행법

-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폭리제한법(가칭) 제정의견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농림 · 해양수산 47

- 제정 기르는어업육성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의견
- 해운법 개정의견

건설 · 교통 48

- 예비면허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자기부담금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의견

과학기술 · 정보통신 51

- 개인정보 보호법제 관련 입법의견
- 스팸메일규제입법관련 입법의견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통신기술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환 경 54

- 군소음관련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수도권광역대기질개선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실험동물법(가칭) 제정의견

보건·복지	55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법원·법무	56
○ 개정 민사소송법	
○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검찰중립화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기업갱생절차법(가칭) 제정의견	
○ 로비활동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민법개정의견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관련 입법의견	
○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변호사법 개정의견	
○ 상업등기법(가칭) 제정의견	
○ 제정 민사집행법	
○ 제조물책임법관련 입법의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친양자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2002 정부입법계획 고시	68
※ 2002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71

◎ 입법의견 현황(2001. 12. 11 ~ 2002. 5. 10)

입법의견조사 제2002-1호에서는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2년 5월 10일까지 다섯 달간 각종 언론매체, 학회세미나, 유관단체 토론회, 공청회, 정부부처 및 정당자료 등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83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개정의견은 63건, 제정의견은 20건이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대한민국헌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2	·	2
◎ 통일·외교	3	1	2
◎ 국 방	·	·	·
◎ 일반행정	4	·	4
◎ 내무·지방행정	4	1	3
◎ 문화·관광	11	3	8
◎ 교육·학술	5	2	3
◎ 노 동	3	·	3
◎ 재정·경제	6	·	6
◎ 통상·산업	12	2	10
◎ 농림·해양수산	3	1	2
◎ 건설·교통	4	1	3
◎ 과학기술·정보통신	5	2	3
◎ 환 경	3	2	1
◎ 보건·복지	2	·	2
◎ 법원·법무	16	5	11
총 건 수	83	19	64

현 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는 선거기간 중에 서신과 전보 등을 보내는 것만을 규제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의한 메일 보내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도 ‘영리목적’의 메일을 스팸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관련 메일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 불법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을 유연하게 유권해석해 적용하거나 온라인시대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임. 현 단계에서 온라인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할 방법은 선관위의 유권해석뿐인 바,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해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임(민경배 사이버 문화연구소 소장, 동아일보, 2002. 2. 18).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1항은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규정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 뿐 아니라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건네는 ‘교부’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제공’에 한정해 이 용어의 해석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선거주민에게 전해달라고 건네주는 교부행위’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선일보, 2002. 2. 22).
- 현행법상 인터넷 매체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이용 확산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인터넷매체의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초청토론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개정을 검토하고자 함. 이는 인터넷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유권해석등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선일보 2002. 2. 17).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

-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관련 법규개정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우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3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납부자와 액수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을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법률신문 2002. 3. 6).
- 정치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음성적 자금 요구는 차단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공개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3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납부자와 액수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함(김태식 참여연대 간사, 새신문 프레시안 2002. 3. 6).
- 법인세 1% 적립은 강제징수 방식이나 다름없어서 납세자인 법인 일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법인 관련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그 가운데에서도 관리공영제를 강화하여 모든 선거관련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국고보조금도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닌 선거비용에 대한 것으로 전환해야 함.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증액할 경우에도 법인세 1%가 아닌 전체 세금에서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이중훈 국회정치담당 연구관, 새신문 프레시안 2002. 2. 26).

○ 국제수형자이송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 내실화의 방안으로 외국에서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을 이송 받아 국내에서 잔형을 집행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 이송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 특히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비해 법무부 내에 ‘인권옹호국’ 신설을 추진함(송정호 법무장관,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2. 2. 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견

-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해서는 회기말 60일 전에 다음해 기금사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계획이라도,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경우, 다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함. 정부가 북한에 대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14명 중 과반수 이상을 정당추천 인사로 함(한나라당 · 자민련, 조선일보, 2002. 2. 5).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의 급격한 이농현상과 출산을 저하 등 동포사회 와해를 막기 위하여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과도한 재외동포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취업 자유보장 조항을 삭제해야 함(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 불법체류나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을 입국규제에서 취업규제로 바꾸고 재외동포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의 소지를 줄여야 함(송석찬 민주당의원).

- 법률개정안이 여전히 재외동포를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일본의 수십만 조선적(무국적) 동포를 법의 범위에서 누락시키게 될 것임. 동포들을 더 이상 관리나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해야 함(임광빈 목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2. 2. 19.

- 이미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외교분쟁의 유발 및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현행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개정안 내용이나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이 중국이나 구소련동포를 포함한 모든 한민족 혈통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인 바,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오히려 국제인권조약에 명백히 위배되고 국내에 입국해 있는 중국동포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정인섭 서울대 교수).

: 국회 안보통일포럼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2002. 3. 22.

일반행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 ①우선 비공개대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의 핵심임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혼란

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 해당위원회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도록 함. ②'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한데, 이는 애초에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심판까지 담당하는 기구였으나 이를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그 대로 두고 국무총리산하에 심의 기능만 있을 뿐 의결권이나 행정심판 기능은 없고 위원마저도 비상임인 형식적인 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함. ③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대상정보목록만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대상정보목록과 비공개대상정보목록을 구별한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고나한법률』에 비공개대상정보조항이나 불복절차 등을 둘 이유가 없는 것임. ④그 외에 적용제외대상정보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관련 정보의 폐지(법 제4조제3항), 공익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의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의무화,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신설 등과 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제외되었는 바, 이상의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서 는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가 되풀이 될 뿐임(임미옥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부장, 법률신문 2001. 11. 22).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부패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을 이원화한 것으로 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는 바, 두 법을 대통령령 수준으로 통합·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윤대범 충남대학교수).
- 고위공직자의 비상장기업 주식취득 금지, 상장기업의 경우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확대 등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떡값수수, 겸직 및 직무외 소득제한 등 공직사회 개혁을 지속해야 함(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 참여연대 주최, 『공직자윤리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2002. 1. 24.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창립 8주년을 맞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권만 갖고 있고 직권조사권이 없어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개선기능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94년 출범한 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처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처리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등의 권한을 갖고 있고, 접수된 민원의 조사와 관련, △피신청인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 설명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출장하여 방문조사하는 권한과 △양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여 진술토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결국 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행정심판 등과 달리 시정권고권만을 갖고 있고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의견표명권만을 갖고 있는 바, 주도권을 갖고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주어져야 함(김만기 한국외대 교수).
 - 옴부즈만이 스스로 행정권의 남용을 인식해 능동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있는 고충민원의 경우는 본인여부를 막론하고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조성한 중앙대 교수).
 - 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주어지면 이에 따라 직권조사권과 법적판단권, 고발 및 결정의 강제권이 주어지고 하나의 독립된 행정조직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이선우 방송대 교수).
- : 고충처리위원회 창립 8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문, 2002. 4. 15.

○ 행정심판법 개정의견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폭발적 증가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는 현행 『행정심

판법』 제14조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변호사 외에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행정심판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없거나 비싼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의뢰를 망설이는 일반인이 보다 쉽게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처분행정청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국민은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분행정청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도록 『행정심판법』이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처분행정청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임(법제처).

- 처분행정청에 재의요구권을 부여한다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처분행정청과의 조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원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법조계).
- 처분행정청의 재의요구권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요건 자체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인용을 받은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함. 행정심판사제도의 도입은 적은 비용으로 행정심판사건을 일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이원 행정심판관리국장).
- 행정심판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행정심판사제도 도입에 반대함(하창우 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법제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법률신문 2002. 2. 18.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의견

-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국민과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각종 준조세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나라 여건상 불가피한 제도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업에 대한 기부금 및 협찬금 형태의 준조세 요구가 크게 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은 각종 기부금품 모집단체 난립과 모금행위 급증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비용 한도를 2%에서 20%로 현실화시키자는 요구는 모집 비용한도를 현행보다 10배이상 증가시킬 경우 기부금품 본래 용도에 사용될 규모가 작아져 순수한 기부금품 모금행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보도문, 2002. 3. 12).
- 기업에서 준조세로 간주하는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기부금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에, 불이익이 두려워 제공하는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기업 기부금의 부담이 각종 단체의 기부금 요청 때문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기업은 정부의 기부금에 시달리는 것이지 비영리민간단체의 기부요청에 시달리는 것이 아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추진위원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경련 보도내용에 대한 시민사회·복지단체의 의견’, 2002. 4. 24).

○ 주민대표소송제관련 입법의견

- 현정권 출범 이후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많은 제도들이 도입·개정되었는 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소액주주권한의 강화와 동시에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감이 필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함. 일본이 임원손해배상 한도를 정하

도록 『상법』을 개정한 사실과 미국이 이사회 내에 특별소송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소송의 합당성을 1차 검증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임 (김석중 전경련 상무, <http://www.fki.or.kr>, 2002. 2. 15).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법률은 외국대사관을 중심으로 100m 내에선 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사관 주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원천적 금지는 없어지게 됨.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집회 및 시위의 최종허가권을 갖도록 하여 외국 대사관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법률은 없고, 외국외교기관보호를 명시한 빈 협약을 원용하고 있음(이창복 민주당 의원,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 평화적 시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공관 보호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강장석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선일보 2002. 2. 27.

- '1인 시위'가 새로운 시위문화의 대명사로 널리 인식되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커졌으나, 거리 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까닭에 그 대안의 하나로 모색된 것이 1인 시위인데, 그마저도 제한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총리주재 치안관계장관회의, 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3. 19).

-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사전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집회 구역 규정 등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 너무 복잡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대폭 제한하고 있는 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1인 시위가 개발되어 정착하게 된 것임. 1인 시위는 나름대로 현행 법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고, 그 뜻이 대체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시간 및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더 발전적인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수해야만 하

는 대민 불편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바, 1인 시위의 이러한 긍정성에 주목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대폭 허용하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함(일일문화정책 논평, 2002. 3. 19).

○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테러의 정의를 국제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테러활동으로 한정하고, 대테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테러사범 수사로 구체화하고, 테러사건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군병력 지원은 국가대테러대책회의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건의해 결정한 뒤 국방장관의 지휘명령을 받도록 수정안을 마련함(한나라당).

- 테러의 정의가 모호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군병력 등의 지원에서 지휘명령 계통이 불명확하며, 테러범죄수사권의 남용 소지가 있음(정부안).

: 중앙일보 2002. 2. 26.

- 우리 나라는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를 마련하였고, 테러행위 예방과 진압, 수사 와 처벌을 위하여 군, 경찰, 검찰 등에 대테러 전담기구 및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하였는 바, 국정원이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가칭)』은 오히려 국방과 사법권을 흔들 우려가 있는 『상설비상계엄법(가칭)』이라 할 것임. 법에 의하면 ‘테러’라는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모호하게 정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유사한 ‘테러범죄미신고’, 외국인에 대한 구속, 도청, 감청, 출국조치규정을 두고 있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조치는 미비하여 제2의 『국가보안법』을 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테러방지법(가칭)』은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KNCC 인권위원회, 성공회 정의평화실천사제단 등 10개 종교단체,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

인 선언', 2002. 3. 11).

- 테러라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입법임에도 『헌법』의 절차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도 없고,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는 것이 문제임.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가칭)』은 국정원과 같은 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일상을 항상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계엄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 기존의 법 시스템 하에서 일상적인 불심검문, 전화 및 기타 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경찰에 대테러 특수부대가 조직되어 있음(이계수 울산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테러방지법안 반대 토론회』, 2001. 11. 21).
-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고,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됨. 『테러방지법(가칭)』이 제정되어 적용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대책협의회 등은 기구만 비대·방만해 그 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도 배치됨(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2002. 1. 24. <http://www.koreanbar.or.kr>).
- 서방 선진국들의 각종 효과적인 테러대책 수립 분위기에 편승하여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한 바, 법안은 규제 대상으로서의 테러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대테러대책과 국가기관의 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법안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테러의 정의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고 따라서 법률의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국가안보', '외교관계', '사회적 불안'은 극히 불확정한 개념으로서 무한정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국가 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도 명확히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주요한 구성요건인 테러범죄의 대상(피해자)인 국가요인, 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 한편 법안은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대책협의회’등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기구는 행정기구의 비대화와 예산낭비의 결과만을 초래할 뿐 그 효율성과 기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이들 기구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국법 체계와도 배치되는 것임.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에 국가정보원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매우 역행하는 것임. 또한 경우에 따라서 시설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로 계엄선포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계엄선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과 수사체계에 있어서도 테러범죄에 대응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보완하면 충분함(법률신문 사설, 2002. 1. 31).

- 기존의 법과 제도 체계로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및 방지대책이 가능함 △현시점에서 『테러방지법(가칭)』 제정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군대는 물론 일반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법안의 각 조항들이 『헌법』 및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별도의 테러대책기구의 운영은 민주적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임(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 2002. 4. 10).

문화 · 관광

- 개정 영화진흥법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공연법
 - 1996년 10월의 영화검열 위헌결정과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영화 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판결 이후 제기됐던 논란을 제한상영관 도입으로 일단락시키고 표현의 자유가 대폭 신장되는 계기를 마련함. 기존의 4단계 영화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제한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등급의 영화는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도록 하며,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유통하지 못하게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그러나 여전히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제한 범위와 제한상영관 설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음.
 - 개정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관람 · 이용이 불가능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의 광고 · 선전물 심사를 내용심사와 같이 사전심사로 전환하는 거임. 이에 따라 비디오와 게임물, 음반의 재킷과 광고물은 사전심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가려야 함.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의 배급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도 환원됨.
 - 개정 『공연법』으로 구민회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공공공연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방지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 이상 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1. 2.
- 개정 『영화진흥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의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 조항 중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 신장의 소중한 싹을 무참히 짓밟음은 물론 민간 자율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등급분류위원회를 검찰의 하위기구로 전락 시키려는 것으로 과거 공연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국가 검열기관의 부활에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으로 분석됨.

: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7개 단체 성명서, 2001. 12. 21.

○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바, 등록대상 공연장의 범위조정과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무대시설 설계검토 및 정기 안전진단 대상 공연장에 대한 범위가 조정되어야 함. 이와 함께 종전에는 공연에 포함되었던 영화상영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각각 해당 법령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망됨. 또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자격검정 응시기준의 실무경력을 단축하여 응시기회의 확대를 도모함. 국내 관광업소에 고용된 외국인연예인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에 대한 세부추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금까지 등록대상 공연장은 객석 500석 이상이었으나 100석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중소 공연장들도 공연장 등록이 가능해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한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종전에는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시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공연시설 기준을 강화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함(문화관광부, 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3, 29).

○ 공연예술분야 지원관련 입법의견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인·민법인·일반단체를 국가나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지정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면제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지원제 도입. 이는 공연예술 사업을 사회복지 사업 등과 동등한 공익사업의 범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커다란 의의를 갖는 바, 특례가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단체는 자발적 기부금에 한함) △개인 기부금 손금 한도 5%에서 10%로 확대 △재정경제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 고시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지정법인·단체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 면제 △부가세 면제대상에 대중예술공연 등 비영리 예술행사 포함 등임. 이밖에도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할부대관료 폐지 또는 인하 유도 △라이브클럽 합법화를 통한 공연공간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되는 중소기업범위에 공연산업의 포함 등을 추진하고자 함. 앞으로 공공 공연장과 전문예술단 간의 상주계약을 장려하여 상호간 유기적 발전 시스템의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벤처기업 범위에 공연산업을 추가하고, 공연장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도와 협의해 나갈 방침임(문화관광부, 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4. 18).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의견

- 일명 1%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사비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쓰도록 한 것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과 미술계 진흥 등을 위해 지난 84년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기초가 이루어지고 1993년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것임.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부실한 미술품을 양산한다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파생되어 논란이 이어져 왔음. 공공미술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변화없이 해결이 어려울 것임. 작가선정의 권한이 건축주에게 있는 한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작가추천 방식과 제도자체의 변화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임(박찬욱 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협의회 집행위원, 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4. 26).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고분도굴의 횡행함은 문화재 관리당국의 대책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에 있는 고분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위탁관리가 맡겨지지만 이들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고분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위탁관리 인력 1명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담당 공무원 등을 관리인력으로 보강하고 2001년 여름 발족한 경찰청의 ‘문화재지킴이’도 투입해야 함. 『문화재보호법』은 도굴시점부터 공소시효 7년이 개시되어 도굴꾼들은 도굴한 지 7년이 지난 뒤 도굴품을 매매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고 있는 바, 도굴품이라는 사실을 제 3자가 확인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함(동아일보 해설, 2001. 12. 9).
- ‘국립문화재연구원’ 설립, 문화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분과’ 신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문화유산 연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관된 문화유산 정책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회계 단년주의에 따른 정책수행의 제약을 극복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한 중요 문화재의 체계적·안정적 보수정비를 위해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을 추진함. 출토유물의 보관 및 보존처리를 위해 대전, 경주 등지에 출토유물 보관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시공평가제 실시 등을 통한 문화재 보수공사의 품질혁신, 매년 5~6건의 중요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보수에 대한 문화재청 직영 실시,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법인체’ 설립 등으로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된 비리와 잡음을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문화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4. 30).

○ 영화진흥법 개정의견

- 제한상영관이 성인영화관으로 가면 실정법이 문제가 되고, 수위를 낮추어 제한상영관으로 가면 실효성이 문제가 되며, 비디오 출시를 허용하면 청소년 보호가 문제되는 바, 제한상영관의 영화를 현재의 에로비디오 수준으로 설정하고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되 철저한 유통방식의

규제가 필요함(신국원 총신대 교수).

- 제한상영관에서조차 포르노물을 상영할 수 없다면 이것 역시 실질적인 검열이 됨(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위원).
-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함(조영각 독립영화 협회 사무국장).
- 현재의 제한상영관 제도하에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될 것인 바, 등급외전용관을 설치하여야 함(이동연 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차장).
- 현재의 예로 비디오물조차도 수위조절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현재와 같은 규제들이 없어졌을 때 상업적 시스템으로 제한상영관이 움직이게 된다면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것처럼 성인물 광고에 시달리게 될 위험성이 있고, 관객들로서는 ‘보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임(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총무).
- 제한상영관이 마치 ‘홍등가’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볼 권리’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할 것이므로 비디오를 통한 개인의 사적인 쾌락의 충족도 담보되어야 할 것임(영화인들).
- 등급위원회는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위치와 견해를 마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임. 사실상 하드코어 포르노에 해당되는 영화에 대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영화인회의의 의견은 현행 『형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주장임(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영상물등급위원)).
- 등급위원회 내에서는 ‘거짓말’이나 ‘노랑머리’ 등의 영상물이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바, 제한상영관에서는 포르노가 상영되어야 할 것임(등급위원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주최, 『성인영화전용관의 도입과 등급분류 문제에 관한 공청회』, 2002. 2. 26.

○ 저작권법 개정의견

- 법개정안이 디지털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간의 디지털 전송도 금지하고 있어 도서관의 자료외부반송을 금지해 놓은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화되어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따라서 도서관은 저작권에 발목을 잡혀 현재의 도서관과 차별성을 지닐 수 없게 될 것임. 『저작권법』은 투자보호법이 아닌 바,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으며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것임.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이 전제가 되지 않은 졸속적인 『저작권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사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 공동 성명서 2002. 4. 25.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소싸움을 관광상품화해서 지역개발을 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상설 소싸움장을 설치하고 마권과 같은 ‘소싸움 투표권’을 발매해 맞춘 사람에게 환급금(상금)을 주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 발행액의 10%를 지방세로 거둬들일 수 있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고자 함. 사행성 조장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투표권 장외 발매소 설치를 금지하고 『마사회법』을 준용해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만들어 법안에 포함시키고, 소싸움에 거는 돈을 경기당 1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며, 미성년자는 돈을 걸지 못하도록 함(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조선일보 2002. 2. 20).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신문사 유가 부수와 재무제표 등의 공개 의무화>

- 신문사의 경우 매년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신문사가 자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

<일간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등을 포함하는 편집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하여 공표해야 함.

<무가지살포 완전금지>

-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경우 독자에게 구독계약을 강요하거나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무가지살포를 완전금지함.

<언론사 경영금지 조항의 강화>

- 언론사 경영금지 조항의 경우 현행법은 일간신문과 통신사, 지상파방송사업자, 대기업과 그 계열사가 다른 언론사의 지분을 50%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3%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시킴.
-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진과 기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며 신문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의무화 조항도 정부가 언론사의 중요한 경영문제에 간섭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음(심규철 한나라당의원).
- 유가부수 공개는 이미 ABC제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님(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
-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문사의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 각종 경영정보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세무당국에의 자료제출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함. 정기간행물의 무상제공 금지 조항은 구체적인 무가지 공급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함. 언론

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주나 재벌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소유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반대론이 공존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문화관광부, 동아일보 2002. 2. 22).

- 족벌사주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자체기구를 두도록 함. 특히 편집위원회 구성은 언론사주들이 편집에 깊이 간여하고 언론 자체가 사주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조선일보, 2002. 2. 14).

○ 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정당한 권한 없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5년간 금지됨. 또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됨.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이들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또한 범정부적 온라인콘텐츠산업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산하에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하여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2001. 12. 7. 수정가결 ; 정보통신부, 동아일보·조선일보, 2002. 1. 16).

○ 출판및인쇄진흥법(가칭) 제정의견

- ‘발행 1년 이내의 책에 대해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할인한도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서정가제 조항이

포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안)』에 대하여 인터넷서점들의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인한 파괴적 책값 하락과 출판 및 출판판매업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이 조항이 필요하다(서점상 측)는 입장과, 할인폭 제한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터넷서점 측)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찬성론>

- 할인을 위하여 정가를 인상하는 것이 출판계의 공공연한 사실인 바, 할인을 맞추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됨.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11개국에서는 인터넷서점도 정가판매를 하고 있음. 인터넷서점에서는 관리비 등의 절감으로 얻는 이윤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물류비(배송)와 시설관리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적자를 보는 것이 현실임. 도서정가제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지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상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하나 출판문화의 붕괴만을 초래할 것인 바, 소비자를 보호하고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국가경제에 유익하다면 긍정적인 규제가 필요함(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반대론>

- 동네서점의 퇴조 원인은 과거 동네서점의 고객들이 이제는 중·대형서점을 선호하는 데서 연유하는 바, 이런 상황에서는 할인 판매를 제한해도 동네서점의 감소를 막을 수 없음. 인터넷 서점의 할인판매는 파이의 이동보다는 파이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 나라 출판사업의 총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였음(조유식 인터넷 서점 ‘알라딘’ 대표).

○ 개정 청소년기본법

- 제225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가출 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2001. 12. 7. 원안가결).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개선>

- 종전에는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바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후 일정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주도록 하였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요건완화>

- 종전에는 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원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가입 의무화>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였음.

<청소년쉼터 설치 및 지원근거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 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1. 8.

○ 농어촌교육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최근 농어촌 교육현장에 ‘탈농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교육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재정마련을 위한 국가 재정 교부금 이원화, 5개 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 도서벽지 근무 교원 병역특례, 도서벽지 근무수당 현실화, 농어촌 학생 대학 특례입학 확대 등을 골자로 『농어촌교육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 (8개 도교육청, 동아일보 2002. 2. 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의견

- 현행 모성 보호는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씩 최대 10.5개월), 산전후 휴가(매월 최저 47만6000원 ~ 최고 135만원을 3개월간 지급) 등 두 가지가 있음. 현재 공무원 및 국립대학 교직원과 국립대 부속 병원 직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반근로자는 2001년 11월부터 ‘모성보호관련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사립 초·중·고 교직원들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립대 교직원 및 부속 병원 직원들만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법개정을 통하여 당해 대상자들이 모성보호혜택을 받도록 함(노동부, 조선일보 2002. 2. 19).

○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인적자원 개발회의의 설치, 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①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②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원활한 조정등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15인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인적 구성함. 평가단을 구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정부의 인적자원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함(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1. 11. 23).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생년월일에 따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 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학 1년생과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연 19세’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가능), 무도학원 출입 및 이용 △이성간의 남녀혼숙 등이 금지되고 있음. 1, 2월생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려면 대학생, 고교를 졸업한 근로청소년 등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로 위헌소지가 있음. ‘연 19세’는 ‘대학생 또는 고교졸업자는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다’는 법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임(청소년보호위원회 : www. youth. go. kr, 2002. 2. 18).
-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된 ‘불량만화’는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를 일컫는데, 이 개념은 동법의 제1조 및 제2조 1항 3호의 ‘선량한 풍속’, 제4조 3항의 ‘풍기 문란’ 등과 함께 추상적이고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그 동안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제공해 왔음. 이번 위헌판정은 이러한 논란을 일단락 짓고,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

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미성년자보호법』을 흡수한 『청소년보호법』의 유사조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 등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음. 특히 이러한 법 개념으로부터 적용범위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많은 예술창작 표현물이 그 동안 유통되지 못하거나, 수거-파기 조치되는 등 비문화적인 대접을 받아 왔음. 『청소년보호법』의 이러한 모호함은 『미성년자보호법』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임. 또한, 지난해 등급분류보류제 위헌 판정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열 기관이라고 판정된 예에서처럼 『청소년보호법』이 존재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기관들도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임(일일문화정책동향, 2002. 3. 4).

노 동

○ 법정퇴직금제도관련 입법의견

- 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실업기간중 생계보장과 퇴직후의 소득보장 기능이 국민연금(1988년)과 고용보험(1995년)의 도입으로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나 법정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기업의 인력채용 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제도도입의 목적을 상실한 채 개별 기업의 부담능력 및 경영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강제하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연금제도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에 자율성과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어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의 범위, 보험료 각출형태 등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 및 지불능력에 맞

는 융통성 있는 제도설계가 가능하고,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으며, 퇴직시부터 국민연금 수급시까지의 가교연금(bridge pens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최성수 전경련 고용복지팀장, <http://www.fki.or.kr>).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벤젠, DMF 등 유해 물질에 의한 직업병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있는 DMF와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 노출 기준과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대상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함. 사문화되고 있는 작업중지권을 노동조합 산안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에게 부여하여 실질화시켜야 함. 특히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나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대해서는 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출입,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지역 내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민주노총 성명서, 2002. 1. 25).

○ 주5일근무제관련 입법의견

- 주5일근무제를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현행 노사정 논의대로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건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대기업이 주5일 근무 도입 초기비용을 납품 단가 인하 등의 방법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되는 등 주5일 근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임(민주노총 성명서, 2001. 12. 18).
-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 없이 단순히 노사간 주장의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굳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우선, 연월차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의 휴일 수는 경쟁국은 물론 ILO기준이나 선진국보다 과다하여 현재 101~111일(남자), 113~123일(여자)의 연간 휴일이 주5일 근무제 시행시 각각 153~163일(남자), 165~175일(여자)로 되어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바, 월차휴가

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통합하여 연간 10~20일을 부여하여 선진국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해야 함. 또한 휴일·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해야 함. 또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율을 ILO기준으로 인하조정(50%~25%)하여, 근로자의 초과근로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실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효과를 최대한 보완해야 함(최성수 전경련 고용복지팀 차장, <http://www.fki.or.kr>, 2002. 1. 24).

재정·경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 대기업이 그 동안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매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동일계열사 의결권 금지는 경영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법개정을 요구해 온 바, ①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동일계열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해 30% 이내에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②자산순위로 일괄 규제해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형태별로 규제방식을 바꾸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함. ③규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내부거래공시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아울러 ④동종 및 유사업종 출자,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 예정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 귀속 출연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정함(동

아일보, 2001. 12. 17).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적발시 위반자에게 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항이 수사초기 단계에서 법 위반사실의 공표는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을 부인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리고 소송에 있어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이에 대한 개정이 요망됨(조선일보해설, 2002. 1. 31).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출자회사 매출액의 25%, 피출자회사 매출액의 50%를 넘는 업종’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범위를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생산, 부품공급 등에 있어 50%이상의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로 정한 것임. 이러한 범위지정방식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집행과정 및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바, 외부인이 개별기업 업종별 매출액 비중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직계열화 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정보 역시 외부인 접근이 차단돼 있음. 순자산의 25%로 규정한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만 금지하는 법률 내용에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리면 10일 이내에 기업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은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시킴(참여연대, 2002. 2. 1).

○ 법인세폐지관련 입법의견

- 세제개편을 논할 때 효율성과 형평성, 납세비용을 고려하는 바, ①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폐지를 고려하면, 법인세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인세의 귀착은 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연인인 개인에게 돌아가며 상품가격에 반영되거나 소득세

와 배당세의 형태로 전이될 것임. 전체 주식중 소유별 소득분포를 보아도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법인세는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확대시키는 세제임. ②효율성 차원에서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욕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외부차입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제가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투자욕을 저하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을 고갈시킬 것임. ③납세비용 측면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과다광고비, 접대비, 기부금 지출 등 낭비를 조장함. 현행 법인세제는 소득 또는 수입의 일정 범위내에서 광고비, 접대비, 기부금 등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므로 경영진은 이러한 지출을 법정상한까지 지출하려는 강한 유인을 받게되는 것임. 이상에서 경제체질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경제의 과제를 감안한 법인세 폐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ttp://www.fki.or.kr>, 2002. 1. 24).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이로 인하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매에 더 신중해지게 되어 주택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임. 노부모와 같이 살며 봉양하는 경우나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함(재정경제부, 2002. 3. 8).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약관을 둘러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하여 ①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심사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소비자분쟁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 신설에 반대함.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적거래 주체의 발의에 앞서 선도적으로 거래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정하고, 이를 ‘표준약관의 제정권’이라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배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제정권은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함(변협, 법률신문 2002. 5. 6).

○ 조세구조 개선관련 입법의견

- 종래까지 사용되던 ‘일반조세’(직접세+간접세) 개념 대신 ‘총조세’(일반조세+사회보장기여금)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구조를 분석한 바, ‘총직접세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자영자소득과약의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 ②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조사를 통하여 다시 확인된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 간의 총직접세 불평등 구조개선 및 과세 누진율의 제고(특히, 아예 역진성을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 강화), ③총직접세 기본세율의 인상과 이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 등임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 민주노총·민주노동당·참여연대 공동 주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2001. 12. 21).

○ 조세특례제한법령관련 입법의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세계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 주요내용으로는 ①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②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추징함. ③'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초기에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재정경제부 세제실, 2002. 1. 28).

<조세율의 인하>

-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가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1~5%로,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되고, 제주도내 첨단과학기술단지과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와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이르면 2003년 3월부터 소득세, 법인세의 10~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포장 및 충전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 8개업종을 추가하기로 함. 조세감면세액 중 상당액을 일정기간내 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자산투자,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함(재정경제부, 조선일보, 2002. 1. 27).
-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의 개정으로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공급가격의 2%를 수수료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농협중앙회가 농·어민에게 판매되는 면세유에 대해 연가 10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유업체가 수수료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음. 개정된 법은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구입권 교부, 관리, 전산처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해 수수료를 면세유 판매업자를 통하여 간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지금까지 아무런 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면세유 구입권 관리업무를 해오다 갑자기 판매대금의 2%를 수수료로 물리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농협중앙회의 이해만을 앞세운 처사임. 가짜 휘발유 단속과 석유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소가 연간 품질검사 수수료 80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면세유 구입권관리업무를 위하여 연간 100억원을 수수료로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유소가 난립,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업자가 면세유 가격에 수수료를 얹어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액의 수수료가 판매업자들에게 전가될 것임 우려됨 (정유업계, 조선일보 2002. 2.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내용>

- 제주도 내 자유무역지역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함. 총 사업비 2000만 달러를 넘는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 또는 1000만 달러 이상의 전통호텔업과 관광유람선업 기업체가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서, 이는 총사업비 2000만~3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보다 세제지원을 넓힌 것임. 단,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업체 스스로 폐업하면, 3년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재정경제부, 조선일보, 2002.3.10).

통상·산업

-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고객통보 유예연장 기간을 제한하여 현재 정보 요구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최장 6개월씩 반복해

유예할 수 있던 것에서 금융거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최장 6개월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에 한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 국가기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실명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요구 및 제공 현황을 파악해 국회 요구 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함(2002. 2. 28. 수정가결 ; 조선일보해설, 2001. 12. 19).

○ 개정 기술이전촉진법·특허법

- 현재까지 국·공립 대학교는 법인격이 없고, 『특허법』에서도 국립대학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하여 특허청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던 바, 그 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하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46개국·공립대학교들도 내년부터는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1. 12. 11).

○ 개정 은행법

-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경우에 현행 규정대로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추가로 확보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기업 건전성이 담보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도록 함(2002. 4. 8. 수정가결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동아일보, 2002. 2. 26, 조선일보, 2002. 2. 27).

○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 2002년 7월 1일부터는 ①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수신자)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전자문서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보게 됨. ②그러나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신자가 △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아님을 작성자로부터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게 됨. ③전자문서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게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수신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 즉, 작성자가 의사표시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민법 제534조 소정의 조건을 붙인 것(즉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은 아니며, 수신자의 수신확인통지를 받기만 하면 승낙의 효력과 계약의 효력이 모두 발생하게 됨.

<소비자 보호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피해구제에 선행하여 소비자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자거래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를 정부책무로 새로이 규정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함. 또한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정보 제공,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주문의 취소·변경절차 마련,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 절차 마련, △소비자 불만 처리절차 마련,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전 등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전자거래촉진시책 강화>

-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대학·민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 현재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조정의 신청, 조정부의 구성,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조서의 효력 및 조정비용 등 분쟁조정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난해 4월부터 전자거래분쟁을 조정하여 왔으나, 소비자피해의 증가와 전자거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이관할 필요가 있었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이고, 분쟁당사자의 법률적 쟁송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 법률상의 기구로 승격시킴. 구체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4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결하도록 하고, 전자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3인이내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이상,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1. 12., <http://www.mocie.go.kr>.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을 24개에서 28개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개정안은 수도권외의 경제력 집중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고,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특화된 지역도시와 지역산업육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성장과급효과가 큰 산업을 수도권에 집중 유치하는 꼴이어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것인 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밖 이전을 통한 인구와 산업의 획기적인 분산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부산지역 92개 시민사회단체, 시민의 신문, 2001. 12. 19).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등록된 사채업자도 연 30~90% 범위에서 정한 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동아일보 2002. 2. 15).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이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했거나 기술표준원·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일부 벤처기업가들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까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바, 기술력 외에 CEO가 윤리성을 갖춰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따라서 벤처캐피탈이 10%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5%를 상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벤처기업 지적요건을 강화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벤처기업 지정 재확인 과정’도 강화하여 기술개발 실적이 부진하거나 대표자가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벤처기업 지정을 취소할 방침임(중소기업청, 조선일보, 2002. 1. 13, 중앙일보, 2002. 2. 27).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우수관리승강기에 대해 연 1차례 받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고, 승강기에 대해 ‘우수관리등급’, ‘관찰대상등급’, ‘개선요구등급’ 등 3등급을 각각 부여하여 우수관리등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개선요구등급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하여 특별대상관리대상으로 지정, 연 2차례 검사와 월 2차례 이상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울러 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의하여 평가된 안전도 점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방침임(산업자원부, 2002. 1. 27., <http://www.mocie.go.kr>).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업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야 함. 재경부 법개정안의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행위 제한’이란 그 내용이 애매한 바, 경품제공행위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신용카드 모집방안에 관해서도 가두·방문모집을 금지한 재경부안보다 강화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영업소 대리점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만 모집을 허용함으로써 가두 외의 장소, 방문 외 형태로 변칙적인 모집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 텔레마

케팅, 우편, 매체를 통한 모집도 금지해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발급신청서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반드시 별도의 용지로 받을 것을 규정해야 함. 제휴업체 등 제3자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범위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해야 함(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2002. 4. 25).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대외거래로 한정시키고,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검찰이 아닌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실제상으로는 정치자금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 외의 마약자금이나 범죄자금의 국내 자금세탁행위 조차 적발하기 어려운 바, 정치자금을 포함하여 국내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 관련 사전통보제는 삭제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새신문 프레스인 2002. 3. 6).
-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관위에 등록시켜 선거기간 각 선거캠프에 국비로 파견, 선거자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선거자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불법자금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종훈 국회 정치담당 연구관, 새신문 프레스인 2002. 3. 6).
- 법정선거비용 내에서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선거자금을 기탁하고, 선관위는 쿠폰을 발행, 모든 선거비용을 이 쿠폰만으로도만 사용하도록 함(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새신문 프레스인 2002. 3. 6).

○ 폭리제한법(가칭) 제정의견

- 연리 60% 범위 이내 이율제한을 골자로 한 제안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이 세제혜택을 받고 이율제한을 받는 1종

사채업자와 이율제한은 없으나 세제혜택은 주지 않는 2종 사채업자로 구분, 등록시키는 등 사실상 사채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서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리사채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정법 마련이 필요할 것인바, 사채 이율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사채업자를 양성하는 내용으로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폭리양성화법』은 전면 백지화하고 『폭리제한법(가칭)』을 제정해야 함. IMF의 권고로 90년간 존치했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결정으로, 현재 연리 수백%의 살인적 고리사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직시해 『폭리제한법(가칭)』 마련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임. △이자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구 『이자제한법(98년 1월 폐지)』 부활을 원칙으로 △적용범위를 금전대차의 소비대차 전반으로 확대하며 △이자 최고 한도는 연 40%대로 하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고,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채권자 탈법 행위 방지 규정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 부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폭리제한법(가칭)』 제정을 제안함(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공동 작성 『폭리제한법(안)』, 2002. 1. 4).

-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은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pm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최고 연리 90%의 고금리를 합법화 함으로써 금융이자보호라는 이름과는 달리 『고리대금합법화법(가칭)』이 될 가능성이 많음. 또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은 이자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너무 많이 뒤 법 집행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최고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폭리제한법(가칭)』 우선 제정한 뒤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의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참여연대, 중앙일보 2002. 2. 21).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 2001년도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연대채무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지분 19.85%를 산업은행에 출자하면서 정부 지분비율이 52.2%에서 50% 미만으로 하락,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에 ‘공사 주식 중 정부 보유지분을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함(산업자원부,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2. 1.30).

농림·해양수산

○ 제정 기르는어업육성법

- 질병에 의한 물고기의 대량 폐사를 예방하고 ‘기르는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물고기 의사)’와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 병원)’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르는어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함. 아울러 기르는 어업 육성에 적합한 토지나 수면을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이 지구에는 지원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이 설치되는 수면에서는 매립, 준설, 토사 채취 등을 금지함(2001. 12. 7. 수정가결 ; 해양수산부, 2001. 12. 10).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의견

- 개는 사육호수에서 국내 최고를 기록하고 사육두수에서 닭과 돼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가축인데도 닭과 돼지와는 달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제경기를 유치할 때마다 시비대상이 되고 비위생적인 도축과 환경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 개도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법개정하고자 함(송석찬 민주당의원).

○ 해운법 개정의견

- 현행 『해운법』은 20여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100t 미만 화물선의 경우 승객을 12명만 신도록 규정해 화물선에 차량을 실은 화주나 운전자 대부분은 별도의 여객선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승용차 30대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 12명의 정원규정에 묶여 18명의 차량 운전자들은 일반 여객선을 타고 가야하며 화물선과 여객선의 선착장이 다른 경우도 있어 물에 내린 뒤에도 차량과 화물을 찾기 위해 다시 이동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최소한의 화주와 운전자도 탑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전남 신안군, 완도군, 조선일보 2002. 2. 16).

건설 · 교통

○ 예비면허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예비면허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한 운전자들에게 6개월에서 2년간 유효한 예비면허를 발급해 준 다음, 예비면허 기간 중에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경우 정식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여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고자 함. 예비면허자는 면허기간 중 일정한 별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차례 교육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경찰청, 2002. 1. 22).

○ 자기부담금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피해보상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하고자 함.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200만원으로 하고 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결정함. 사고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불지연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한 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임. 자기 부담금제의 적용범위는 무면허, 유상운송, 음주운전사고, 고지·통지의무위반사고 등임. 아울러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에 포함시켜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의 대인손해배상 한도도 진료비, 소득증가 추세에 맞춰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인상함(건설교통부, 조선일보 2002. 1. 27).

○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은 그간 상가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정추구를 받아 온 대표적인 민생법으로 특히, 임차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던 상황에서 대항력 규정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마련되어 임대인들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임차상인들 내몰림, 부당임대료 인상, 폭리를 취하는 것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보증금을 날렸던 임차상인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는 등 그 동안의 법 부재 상태에서 비롯되었던 억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됨. 장기적으로는 ‘상가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되풀이되어 오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2중계약이 사라져 관행적인 임대인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임차 상인들이 최소한 5년동안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상가법제정의 긍정적 성과로 평가됨.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남아있는데, ①우선 건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필요비’와 건물에 필요한 시설을 통해 건물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강행규정이 되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민사소송에 맡겨지게 됨으로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또 다른 피해를 야기 할 수 있게 됨. ②상가법제정으로 단기적으로 상가임대료의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됨.

즉, 법 제정으로 최소 5년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건물주인들이 시행 초기 건물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경과조치 등을 통해 '차임증감청구권 규정'과 '월세산정 이율규정' 등도 법 시행 때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야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임. 제정 '상가법'에서는 영세상인의 보호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1억에서 2억 이하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전재산을 투자·담보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로 영세상인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이밖에 5년으로 확정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역시 최소 9년에서 14년까지 보장되고 있는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봐서 5년은 너무 짧은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보증금제도'가 없어져 경제안정 및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시민의 신문 기획 2001. 12. 10).

- 세무조사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법 시행을 2002년 9월로 앞당기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기존의 계약을 소멸하고 법시행에 맞춰 재계약하는 것)이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안 제정 등의 조치가 동반되어야 함. 임대료 부당인상 건물주에 대한 세무조사 대책은 일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설적인 신고센터로 운영하여야 함(민주노동당, 시민의 신문 2002. 5. 3).

○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의견

- 누적 적자의 해결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중점과제로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마련 되었는데,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통합,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2002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도록 하고,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철도운영회사를 만들어 이관한 뒤 점진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하여 완전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철도사업의 구조개혁이 중단될 경우 선진국 수준의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가 상실됨은 물론, 오히려 국민적 부담만 증가하므로 조속히 철도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함(양

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 차장, <http://www.fki.or.kr>, 2002. 1. 25).

과학기술 · 정보통신

○ 개인정보 보호법제 관련 입법의견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시 처벌은 『형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규율하는 단일법을 만들어야 함.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해야 하고, 법률의 해석과 판례에 의해 명예회복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전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명문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정완용 경희대 교수,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법적구제’, 한국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2001. 12. 21).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성립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약관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급에 한정되며, 최근에 등장한 전자화폐·전자채권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은 전통적인 전자자금이체의 법리만을 가지고는 규율할 수 없고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업무기준, 정부의 지원정책·감독 등에 관해서는 성질상 규정할 수 없는 바, 『전자자금이체법(가칭)』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손진화 경원대교수,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한국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2001. 12. 21).

○ 스팸메일규제입법관련 입법의견

- 스팸메일의 규제를 위하여 기존의 옵트아웃(opt-out : 광고메일에 대해 일일이 수신거부를 요청해야 광고메일이 차단되는 방식) 방식에서 옵트인(opt-in :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광고 메일을 허용하는 방식)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원하는 사람만 광고메일

을 받도록 해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옵트인방식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마케팅산업을 저해하고 대기업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의 가능성에 대해 △수신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방적인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나 표현의 자유를 논할 수 없으며 △개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만 메일발송이 된다면 마케팅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음(이은우 민변 변호사).
- 옵트아웃과 옵트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만큼 처벌절차와 규정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현행 법률이 옵트아웃과 과태료 제도(500만원)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스팸메일을 합법화한 법이었던 바, 입법안은 옵트인 방식을 요구하는 한편 강력한 형사처벌규정도 포함시켜야 함(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문날인 반대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2002. 4. 26.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현재 민간 차원에서 ‘도메인이름체제(DNS)’에 기반한 인터넷주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분쟁해결 및 예방,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대책 등이 모호하여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관한 국내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소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칭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법·제도적 원칙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주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 민간기구, 인터넷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고자 함.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인터넷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주소 기반의 비즈니스에 대한 심사절차를 도입할 방침임(정보통신부, 조선일

보, 중앙일보 2002. 3. 3).

○ 정보통신기술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자들의 등록과 경력변경 사항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각종 정보통신기술 자격자들의 자격취득 및 재교육상황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중앙일보 2001. 12. 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하며,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 사이트는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법이 '스팸메일에 대해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음란한 영상 등 유해성 매체물을 선전하는 스팸메일을 받은 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유해성 매체물은 수신자가 사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개정 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하도록 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개정할 방침임(재정경제부, 동아일보, 2002. 1. 13).

환 경

○ 군소음관련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군 비행장 주변 주민은 전국적으로 3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선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별법은 『항공법』을 준용해 이주대책과 방음시설 설치, 건축제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임. 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민·군 공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회사에서 거둘 ‘소음부담금’ 등으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국방부, 중앙일보, 2002. 1. 8).

○ 수도권광역대기질개선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대기의 질의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대기오염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광역대기질개선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서울과 수원, 인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환경부보도자료, <http://www.me.go.kr>).

○ 실험동물법(가칭) 제정의견

- 실험동물을 윤리적 차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동물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실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와 실험방법이 정당한지 등을 심사해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실제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실험동물에게 만성적 고통과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함. 또한 동물 실험실

이 식약청의 관리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이를 폐쇄조치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 따른 인체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시설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함(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일보 2002. 2. 18).

보건·복지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의견

- 현행법은 그 목적이 가정의 평화, 안정회복과 건강한 가정육성에 초점 맞추고 있으나 가정내 폭력의 문제가 피해 당사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 119 구급대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해야 하고 응급조치 조항을 강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격리, 체포 및 범죄수사가 가능하게 함. 재발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도록 함(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 한일비교연구』 보고서, 2002. 2. 2).

○ 의료법 개정의견

- 개정 『의료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자의 특별한 경제적 사정을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법 개정안 심의시 삭제된 바, 노인의료복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까지 노인 무료진료를 일절 할 수 없게 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됨(동아일보 해설, 2002. 1. 20).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여부 관련>

-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행위 제공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소위 보험의)으로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하여 구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1·4·5항과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청구인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제도에 동원,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의사 각자의 능력, 의료행위의 질 등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하고 있음(황덕남·이덕우 변호사).

- 법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강제편입제도를 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임(이찬진 변호사).

: 이상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변론, 2002. 2. 21.

법원·법무

○ 개정 민사소송법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10배까지 인상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 뒤 7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게 됨. 소송이 제기된 피고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무변론 판결제도’도 도입함(2001. 12. 6. 가결).

○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증가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내 거주와 출입국이 자유롭도록 '영주비자'를 발급하여 영주권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생계활동을 위하여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법무부, 중앙일보 2002. 2. 27).

○ 검찰중립화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권의 영향을 보다 철저히 배제하는 내용의 강력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 ①검찰총장은 현직 서울고검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장중에서만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②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반드시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며 ③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함. 그 외의 방법인 구두나 다른 조직을 통하여 전달되는 지휘권 발동은 무효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④검찰 내의 각급 검사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여 누가 집권하더라도 집권자가 검찰을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⑤재정신청은 유신전과 같이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허용하도록 전면 개방해야 함(법률신문 사설, 2002. 3. 7).

○ 기업갱생절차법(가칭) 제정의견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과산법」 등 3개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한 「기업갱생절차법(가칭)」을 제정하여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대폭 제한하도록 함. 현행법에는 부실기업주가 대가 없이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 중 부도 6개월 전에 넘겨준 것까지만 법정관리인이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주가 1년 이내에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친인척에게 빚을 갚는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60일 이내의 행위만 무효로 보았던 것을 6개월 내의 변제행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환수함. 아울러 법정관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미국식 제도

(오토메틱스데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조선일보 2002. 2. 24).

○ 로비활동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다 공개되어 있지만 교총이나 기업·정부 등 상대측의 활동은 알 수 없고, 그들이 로비활동을 통해 제시하는 자료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로비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인 바, 시민단체들의 입법·공익로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로비활동공개법(가칭)』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양세진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시민의 신문 2001. 12. 18).

○ 민법개정의견

현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접근성과 사법의 세계적 통일화에 맞추어 재산법 분야 전반에 걸쳐 법개정 하고자 함.

<총칙편>

- 사적자치 원칙 조항(제1조의2) :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조항이 없어 해결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될 경우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현상을 부추길 염려가 있음(강일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성년기 조항(제4조) :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만 18세인 점과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장려되는 것 등을 들어 성년기를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함(이상욱 영남대 교수).
- 착오에 관한 규정(제109조 제2항) :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에서 제109조 제1항의 ‘법률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와 제2항의 ‘거래상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의 차이점이 불분명함(안법영 고려대교수). 동기의 착오를 취소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범위가 너무 넓어져 거래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강일원 재판연구관).

<물권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제357조의2)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특정의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의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면서 이들이 중복적으로 하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위 3가지 피담보채권을 모두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실상 무제한적 포괄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게되는 문제점이 있음(이동명 서울지법 부장판사).
- 지상권의 존속기한(제281조제1항 단서, 제3항·제4항) :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지상권의 소멸통고(6월내지 2년 후 지상권 소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관습법상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김재형 서울법대 교수).
- 근저당권의 양도(제357조의5) :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의 유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김재형 서울법대 교수).

<채권편>

- 채무불이행과 해제(제544조의2) : 채무자의 사정은 상당한 기간의 최고로 고려되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나 과실 요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임(정종휴 전남대 교수).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제544조의4)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정변경에 맞게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허만 서울지법 부장판사).
- 건물도급인의 해제권(제668조) : 건물도급인의 해제권을 인정해 건물의 철거도 가능하게 되며 부실 건축물의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받은 하수급인들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허만 서울지법 부장판사).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제755조 제2항) : 미성년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부모를 면책하는 것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입법상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부모를 선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함.
 - 근보증 기간(제448조의 3) :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더라도 갱신이 가능하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당사자는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함(김홍엽 변호사).
- : <http://www.moj.go.kr/>, 법무부 민법개정안 공청회, 2001. 12. 13~14.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관련 입법의견

- 수지 김 간첩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폭행치사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됨. ‘반인도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행위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착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조약에 가입 △반인도적 국가범죄자 즉각 기소 등을 촉구해야 할 것임(동아일보, 2002.3.8).
- 국제사회는 인권을 위협하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처벌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유엔 총회는 1968년 뉘른베르크 헌장을 원용하여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음.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 유럽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고 있는 바, 국제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국내법을 정리하거나 이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박찬운 변호사).

- 우리 나라의 입법례로써는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 관한특례법』을 제정,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및 집단 살해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5·18 민주화 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역시 국가의 소추권이 막혔던 기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단한 것임(동아일보, 2002. 1).

○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난 94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판사의 직급을 폐지하고 단일호봉제의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하위법인 『법관등의보수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고등부장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되는 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부장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지법부장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더 나아가 합헌적인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수의 법관을 일단 모두 고등부장으로 발령해서 같은 처우를 해야 할 것임(문홍수 부장판사).
-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직위와 직책에 따라 보수가 차별화 되는 것은 보수의 기본원칙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모든 법관을 고등부장으로 발령해 차관대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공직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대법원 관계자).

: 법률신문 2002. 4. 11.

○ 변호사법 개정의견

-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100조 4·5·6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2001헌가19)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실심 법원인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하여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만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규정들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변호사들은 앞으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임(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2. 28. <http://www.ccourt.go.kr/>).

- 현재는 법무법인이 「상법」상 합명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들의 무한연대책임과 의사결정의 경직성(만장일치) 등으로 법무법인의 대형화 등이 부적합하므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무한연대책임의 완화, 보완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마련 등을 통하여 법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함(법무부 2002년 주요업무계획).

○ 상업등기법(가칭) 제정의견

- 기업은 영업 내용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적인 조직과 책임관계의 내용을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제도는 일반 공중과 기업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 지금까지 상업등기에 관하여 별도의 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채 「비송사건절차법」 제129조~제246조에서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등기사무 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문서에 의한 상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법규정을 차체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상업등기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화·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 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리·독립시켜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급하고 타당함(대법원, 법률신문 2002. 2. 18).

○ 제정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도록 재산

명시 의무가 강화되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매절차에서도 경락(낙찰)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시간을 끌고자 항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는 부동산 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함. 정식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돈이나 유가증권을 간편하게 받아낼 수 있는 독촉절차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범위를 늘리고, 이밖에 ‘하자’를 ‘흠’으로 바꾸는 등 한자어로 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대체함(법무부, 동아일보, 2001. 12. 10).

○ 제조물책임법관련 입법의견

-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제품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전히 입증책임 관련 규정이 없어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상 결함이 증명만 된다면 제조자는 절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많은 경우 제조상 결함은 사고시 원형이 남아있지 않거나 복제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상 결함 이외에 소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또한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제조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면책’되는데 이 적절한 조치가 어느 수준까지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할 경우에만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고, 소비자들이 결함을 발견했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오용,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등은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 바,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제조물책임법』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임.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포럼, 2002. 4. 25.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결함대상 기업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

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은 낮은 반면 기업의 부담만 높아지게 됨. 결합대상 기업집단은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로서 기업집단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만큼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대폭 완화해야 함. 외부감사비용, 결합재무제표 결산시스템 도입, 전담임원 배치, 자료수집 등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기업집단별로 10~30억 원 추가 부담)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내 업종간 결산일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특히 지분율이 낮은 해외 종속법인의 경우 관련자료 확인을 꺼려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①결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연결자산이 결합자산의 6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②대상 계열사간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단순 합계 및 상계하는 방향으로 작성방법을 간소화하고 작성 기업집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③공시체제가 실질지배력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폐지해야 함(김윤모 전경련금융조세팀과장, <http://www.fki.or.kr>).

○ 친양자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 재혼이 급증하면서 자녀의 양부(養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양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혼가정의 고통을 줄여보고자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여 범제화하도록 함(여성부).
- 현행 『민법』은 양자는 물론,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못하게 돼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혼·사별 등의 이유로 어렵게 재출발한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름으로 인해 자녀들은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 상처를 받고 있고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자녀들간의 성과 본도 달라 가정불화와 파탄의 주요원인이 됨. 재혼가정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생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함.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상속 등 복리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재혼 가정은 존립이 어렵고 그로 인한 파탄

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 친양자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행 『민법』상 양자제와 친양자제로 이원화되므로 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임(조선일보 사설, 2001. 2. 7).

○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 84년 『행정소송법』 개정시 처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논의했다가 독일법의 영향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변질되었는데 우리 판례는 후반부의 포괄적 문구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법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따르고 있음.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형식이 아닌 자족법(自足法) 형식을 취해야 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확대와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함.

<행정소송대상의 확대>

- 독일의 경우처럼 행정소송의 대상을 공행정작용 전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행정입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원고적격문제에서 이익상황의 구체성, 직접성, 현저성을 요구해 남소를 방지하는 것임. 84년 법 개정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를 무시하고 처분성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생겨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행정소송의 일부를 분담해 온 바, 이를 다시 대법원에 돌려주어야 함.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인적장비가 충분하고 3심제로 행정입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사실심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행정입법,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을 맡아야 함.

<사물·심급관할의 조정>

- 현재 민사소송으로 취급하고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반환 사건 중 처분으로 발생한 것은 행정소송의 관할로 바꾸어야 함

: 이상 박정훈 서울대 교수,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실무연구회 주제발표문. 2002. 1. 28.

- 행정소송에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사건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재사건, 국가유공자관련 사건, 고엽제관련 사건 등에서 원고 당사자 본인의 소송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산재로 인한 뇌졸중으로 언어구사가 어렵다거나 군대내 구타로 정신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들이 출석하여 합리적으로 변론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여 원고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와 친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인' 제도라도 두어 가족이 변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또 행정소송에서도 화해·조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으로는 화해·조정이 불가능하여 '조정권고 후 소취하'라는 방식으로 화해·조정을 하고 있음. 항고소송중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청구사건, 조세소송, 과징금사건, 부당해고·산재사건 등을 중심으로 전국법원에서 사실상 화해방식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유도하고, 이는 실무관행으로 정착되어 왔음.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독일 『행정법원법』에는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이 결정에 대해 1개월내 구두변론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신청이 있으면 재판절차가 속행되고 이 신청이 없으면 판결로서 효력을 가지게 함. 독일 『행정법원법』에는 상소허가제가 있어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바로 이 결정에 대한 상소제기도 가능함. 소송경제상 큰 이점이 있는 화해·조정을 명문화한다면 소송수행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임. 98년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사건의 1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에서 1심을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하는 3심제로 원칙이 바뀐 이후 아직도 일부 특별법들에 남아있는 관할 문제의 정비도 시급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실무연구회, 2002. 1. 28.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진술에서까지 아동의 증언을 요구하는 현행 법과 절차는 아동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결국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바, 성폭력 초동수사시 아동의 진술을 녹음하고 아동심리학자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부모 등에게도 증거보전 청구권을 인정해야 함(아동학대근절을위한가족모임, 조선일보 2001. 12. 20).

※ 2002 정부입법계획 고시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개정) =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신설됨에 따라 의정부지원 합의부와 강릉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지정.
- ◇검찰청법(개정)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
- ◇형사소송법(개정) = 국선변호 확대, 필요적 보석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허용 등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실현 및 인권보호 확대.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 = 소년·성인 구분없이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필요여부 심사자료의 제공을 위한 가석방·가퇴원 사전조사제도 도입. 집행유예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중간적 제재조치 신설.
- ◇출입국관리법(개정) = 홀리건 등의 입국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월드컵 경기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집단밀입국 관련사범 처벌 강화.
- ◇변호사법(개정) = 다양한 유형의 공동법률사무소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완화.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 ◇법무사법(개정) = 법무사에게 경매·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한 등 부여. 법무사 자격취득방법을 법무사 시험합격자로 일원화.
- ◇여권법(개정) =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거부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을 특별하게 부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 신설. 일부 여권발급 수속 대행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민법(개정) = 현행 20세인 성인연령을 19세로 인하 검토. 보증행위의 서면화 등 보증제도 개선. 근저당권의 양도 및 채권최고액의 변경 등 근저당권 관련규정 정비.
- ◇호적법(개정) = 국가사무인 호적사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의 호적사무를 감독.

- ◇관세사법(개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법개정 당시 기존의 관세경력직 공무원에게 관세사 자격 부여.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해 통관업 허용.
- ◇국고금관리법(제정) = 중앙관서별 통합징수제도 및 전자 고지·납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통합지출관제도를 전면 실시해 국고수표를 폐지하고 전자이체를 시행.
- ◇전자금융거래기본법(제정) = 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권리·의무 규정.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 ◇행정절차법(개정) = 행정절차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분의 신청 등 행정절차의 운영을 전자문서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보충송달의 도입으로 원활한 송달업무 도모.
- ◇관광진흥법(개정) = 내국인 이용가능 카지노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에 대한 조건부 허가 도입 검토.
- ◇축산법(개정)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계란의 경우 계란집하장에서 자율적으로 등급판정을 받고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산지관리법(제정) =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개선·정비하고 산지전용허가 후 장기간 사업방치지역에 대하여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한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도입.
- ◇특허법(개정) = 특허협력조약(PCT) 개혁안을 반영, 국내 서면제출기간을 30개월로 통일해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출원인의 편의 증대 도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 부정복제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절차 신설.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제도 정비.
-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 = 야생동식물의 보호, 관리체계 마련하고, 야

생동식물 수출입 승인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여 생물자원의 국외 유출 방지를 도모함.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 현행 5백억원인 최소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회사설립요건 완화. 부동산취득후 처분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등 자산운용 제한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 및 재건축사업 등 종전 개별법에 각각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여 노후 불량주택 정비와 관련된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 명확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하도록 함.

※ 2002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 ◇선거법(개정) =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7일로 연장함. 후보등록때 소득세.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 광역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이상 공천토록 의무화 함. 지역구도 30% 이상 여성 공천을 권장함.
- ◇정당법(개정) =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함. 정당 유급사무원을 지구당에는 2명 이내, 구·시·군 연락소에는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광역의원 여성 공천비율을 지킨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 = 정당이 허위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했을 경우 허위 보고한 금액의 2배를 감액지급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중앙당에 대한 보조금의 25%를 감액토록 함.
- ◇국회법(개정) = 자유투표제를 명문화.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되 다음 선거에 정당공천으로 출마를 할 때는 임기만료 90일전에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여성특위를 상임위로 함.
- ◇국정감사조사법(개정) = 매년 9월10일 국정감사를 시작함. 국정조사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 순위를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중 다수당 간사로 함.
- ◇국회증언감정법(개정) =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디스켓 또는 전자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국회의 검증절차를 명문화.
- ◇인사청문회법(개정) = 인사청문특위의 활동기간을 12일에서 15일로, 인사청문회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각각 연장함.
- ◇지방자치법(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함.
- ◇의료법(개정)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외국에서 공

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토록 함.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최고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같은 기간에 의료기관의 영업도 정지함.

◇약사법(개정) =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추가함.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최고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법(개정) = 전전년도 교통범죄금 총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구급차 운송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등을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고 6개월까지 업무정지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 백화점 등 유통회사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신용카드 신규발급 때는 반드시 본인의 발급신청을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선 부모 동의나 납세증명을 받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케 함.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절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법(제정) =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함.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표시, 고지하도록 함.

◇방문판매법(개정) =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이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방문판매에 포함시켜 규제함.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 등에 직접 어음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 =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10일 내에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요구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직책 등을 명기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개정) = 지방공사의 계약때 공정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경우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민원사무처리법(개정) =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인감증명법(개정) =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대체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 = 국기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 함.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을 9월 16일까지 연장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 = 도주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상해치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